

현행	개정안	비고
제4편 의회법 제 1 장 총 칙 【297】 제2조(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를 둔다.	제4편 의회법 제1장 총 칙 【297】 제2조(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u>입법의회</u> , 총회를 둔다. <개정>	총회와 입법의회 분리
【299】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 총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평신도 대표 중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 ④ 각 의회의 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299】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좌동> ① <u>연회와 총회 및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u> <개정> ② <u>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는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 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 다만 평신도 대표는 장로이어야 한다.</u>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여성 15% 의무 할당 50세미만자 15% 할당
【300】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u>감독, 감독회장</u> 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단,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00】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u>연회장, 감독</u> 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감독, 감독회장→연회장 감독
【307】 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u>서리담임</u>	【307】 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u>서리담임</u>	

현행	개정안	비고
자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u>하고 있는 수련목회자</u> 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314】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③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④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⑥ 당회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⑧ 당회는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⑨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⑪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⑫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314】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좌동> ⑫	
	【000】 제00조(사고 당회의 처리)	사고당회처리

현행	개정안	비고
	① <u>당회가 제11조(당회의 소집) 제1항이 규정한 정기당회 소집 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당회로 지정한다.</u> <신설> ② <u>제1항에 의하여 사고당회로 지정된 개체교회의 당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u> <신설>	
	제2절 임원회 【000】 제00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 ① <u>임원회는 담임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담임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는 위임받은 부담임자나 장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담임자가 유고나 궐위인인 경우는 감리사나 감리사가 위임한 부담임자나 장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u> <신설> ② <u>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되, 담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u> <신설>	임원회 직무대행 명기
제 3 절 기획위원회 【319】 제24조(기획위원회)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제 3 절 기획위원회 【319】 제24조(기획위원회의 소집)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기획위원회를 두며, 담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정기기획위원회 매월 의무
【320】 제25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u>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7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u> 위원을 충원한다.	【320】 제19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u>남선교회회장대표, 여선교회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회장대표,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순으로</u> 선출하며, 나머지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각 선교회장 및 부장 우선 선출하고, 추가 인원은 임원회에서 선출

현행	개정안	비고
【321】 제26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협의 ②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③ 신천장로 천거 ④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 ⑥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321】 제26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u>결의</u>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u>결의</u> <개정> ⑥ <좌동>	일부 결의권 부여
제 3 장 구역회 제 1 절 구역회 【324】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②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u>1주일</u>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역회 제 1 절 구역회 【324】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① <좌동> ② <u>임시구역회는 담임자 또는</u>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u>청원</u>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개정> 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u>7 일 전까지</u>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u>구역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도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연회 연회장이 소집하고 일시와 장소는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u> <신설>	구역회 14일내 의무소집
【325】 제30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 <u>전도사</u>, 교육사, 심방전도사	【325】 제30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목사, <u>수련목회자, 서리담임자</u>, 교육사, 심방전도사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장로, 권사, 속장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⑤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	② <좌동>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u>예배부장</u> ,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개정> ④ <좌동> ⑤ <좌동>	
【326】 제31조(구역회 의장) <u>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감리사 유고 시에는 소속 연회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할 수 있다.</u>	【326】 제31조(구역회 의장) ① <u>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개정></u> ② <u>감리사 유고 시, 또는 제 29 조 4항의 경우에는 연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u> ③ <u>이 법 제33조 6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다. <신설></u>	부동산 매매 위임금지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현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④ 구역회는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⑤ <u>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u>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삭제>	⑤ 구역재판위원회->연회이관

현행	개정안	비고
<u>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u>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⑥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329】 제34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예배 ② 서기선택 ③ 회원점명 ④ 보고접수(서식대로 지면으로) 1. 목사 2. 전도사 3. 교육사 4. 심방전도사 5. 장로 6. 권사	【329】 제34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7. 속장 8. 선교부장 9. 교육부장 10. 사회봉사부장 11. 문화부장 12. 재무부장 13. 관리부장 14. 남선교회 회장 15. 여선교회 회장 16. 청장년선교회 회장 17. 청년회 회장 18. 교회학교 교장 19. 당회 서기 ⑤ 지방회 대표 선출 ⑥ 예배당과 주택에 관한 사무처리 ⑦ 구입, 매매, 임대차 또는 기증한 동산과 부동산의 사무처리 ⑧ 감사보고 ⑨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부담금 사문 ⑩ 신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 ⑪ 그 밖의 사무처리 ⑫ 폐회	7. <좌동>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u>예배부장</u> <신설> 12. <좌동> 13. <좌동> 14. <좌동> 15. <좌동> 16. <좌동> 17. <좌동> 18. <좌동> 19. <좌동> 20.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좌동> ⑫ <좌동>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현행	개정안	비고
【334】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일 이내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 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부담임목사와 수련목회자의 인사 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 ⑤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⑥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 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 ⑦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 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단, 재판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334】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부담임자와 수련목회자의 인사 처리 <u>및 기관 파송 교역자의 소속에 관한</u>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 <개정>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④ 기관파송자 구역인사처리
【335】 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35】 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u>감독</u>이 직권으로 파송한다. ③ 부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① <좌동>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u>연회장</u>이 <u>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조(담임자의 파송) 4항에 따라</u> 파송한다. <개정> ③ 부담임자와 <u>기관 파송교역자의</u>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338】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① 해당 지방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 ② 지방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 ③ <u>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 및 선교사 후보)</u> ④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 ⑤ 남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 청년회지방연합회 회장 ⑥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제4장 지방회 제1절 지방회 【338】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u>다음의</u> 회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수련목회자(서리담임자, 군종사관후보생 및 수련선교사)<개정> ④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예배부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 <개정> ⑤ <삭제> ⑤ <u>교회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u>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개정>	④항,⑤항→통합

현행	개정안	비고
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⑥ ⑦항과 <좌동> ⑦ <u>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u> <신설>	
【339】 제44조(지방회의 소집) 지방회는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가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339】 제44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지방회는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u>정기지방회는</u>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② <좌동> ③ <u>임시지방회는 필요시에 지방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리사가 소집한다.</u> <신설> ④ <u>감리사가 유고나 궐위일 때는 연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u> <신설> ⑤ <u>지방회 소집권자는 지방회가 개최되기 14일 전에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개체교회의 지면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u> <신설>	③ 임시지방회 명기 ⑤ 지방회 공시
【340】 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 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40】 제45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회 감리사가 된다. ① <u>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u> <개정> ② 감리사가 <u>궐위일</u> 때에는 <u>연회장이</u>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로 안수하며 신천장로, 복권되는 장로, 이명장로를 파송한다.	【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u>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6조(감리사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사 선거를 실시한다</u> <신설> ② ①항과 <좌동>	①항→②항

현행	개정안	비고
1. 당회에서 천거한 신천고시과정 장로와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에 대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임명을 의결한 후 장로증서를 준다. 2. 모든 과정을 마친 장로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한 후 장로안수를 한다. ② 연회 준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 회원 허입을 연회에 청원한다. ③ 각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을 선출한다. 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⑤ 지방 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한다. ⑦ 각 교회별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⑧ 지방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물품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 ⑨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 ⑩ 지방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지방회에 교회현황을 문서(별도양식 참조)로 매년 보고한다.	③ ②항과 <좌동> ④ ③항과 <좌동> ⑤ ④항과 <좌동> ⑥ ⑤항과 <좌동> ⑦ <u>지방회는 심사와 재판 위원으로 가급적 해당분야에 경험이 있는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을 선출하여 연회에 추천한다.</u> <개정> ⑧ ⑦항과 <좌동> ⑨ ⑧항과 <좌동> ⑩ ⑨항과 <좌동> ⑪ ⑩항과 <좌동>	⑥항→⑦항

현행	개정안	비고
⑪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⑫ 지방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따라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분할 건의안을 연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분할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년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의 임명된 년수에 상관없이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⑭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	⑪ <삭제> ⑫ <좌동> ⑬ <좌동> ⑭ <좌동> ⑮ <u>감리사의 유고나 궐위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30일 이내에 임시지방회를 소집하여 후임 감리사를 선출하며 보선된 감리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	⑪ 지방재판위원회 폐지 ⑮ 임기 반이하인 경우 직무대행이 감리사 잔여임기 업무처리

현행	개정안	비고
	【000】 제00조(사고 지방회의 처리) ① <u>지방회가 정기지방회 소집 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연회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지정한다.</u> <신설> ② <u>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고지방회는 연회장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한다.</u> <신설> ③ <u>연회장이 제2항에 따라 당해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u> <신설>	사고지방회 처리방안 신설
【347】 제52조(지방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전도사, 장로과정고시위원회 : 전도사와 장로의 과정고시를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총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령에 준하여 과정고시를 실시한다. ② 전도사, 장로자격심사위원회 : 전도사, 장로 및 연회 준회원에 허입할 이의 품행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 심사위원회에 제소한다. ③ 선교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의 선교정책과 연회의 선교방침에 따라 지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교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의 기독교교육정책과 연회의 기독교교육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기독교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사업 정책	【347】 제52조(지방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과 연회의 사회평신도사업 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평신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⑥ 재정위원회 : 개체교회 재정운영 실태 조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한다. ⑦ 교회관리분과위원회 : 개체교회의 건물, 임대차, 비품,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와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 보고한다. ⑧ <u>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 재판위원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u> ⑨ <u>재판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고소·고발 사건을 재판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u> ⑩ 건의안심사위원회 : 지방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검토하여 지방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⑪ 투표위원회 : 지방회 개회 중에 실시하는 각종 투표업무를 분담한다.	⑥ <좌동> ⑦ <좌동> ⑧ <삭제> ⑨ <삭제> ⑧ ⑩ 항과 <좌동> ⑨ ⑪ 항과 <좌동>	⑧, ⑨ 심사 및 재판위원회 연회기관으로 폐지
제3절 지방 실행부위원회 【350】 제55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닫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제 3 절 <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 <개정> 【350】 제55조(<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닫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개정>	지방→지방회
【351】 제56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u>지방 실행부위원회</u>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u>지방</u> 감리사, 서기 및 회계 2. 각부 총무	【351】 제56조(<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서기 및 회계 <개정> ② <좌동>	지방→지방회

현행	개정안	비고
3.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4.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5. 감사와 <u>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u>은 직권상 지방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保有한다.	③ <좌동>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u>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u> <개정> ⑤ 감사는 직권상 <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保有한다. <개정>	⑤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 → ④ 로 이동
【356】 제61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 ② 지방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분석 ③ 지방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 ④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⑤ 지방 내 교회의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또는 민사, 형사상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조정하여 화해를 도모한다.(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⑥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 : 개척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의 심의 ⑧ 그 밖의 지방회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356】 제61조(<u>지방회</u>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u>감리사가 유고나 궐위시 또는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거나,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직전 감리사가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리사를 역임한 이 중에서 감리사 직무대</u>	⑨ 직무대행 선출방법

현행	개정안	비고
	<u>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리사 직무대행은 지방회 및 지방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리사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u>	
제 4 절 지방 인사위원회 【357】 제62조(지방 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 4 절 <u>지방회</u>인사위원회 <개정> 【357】 제62조(<u>지방회 인사위원회</u> 의 설치) 지방회 안에 <u>지방회 인사위원회</u> 를 둔다. <개정>	‘지방’→‘지방회’
【358】 제63조(<u>지방 인사위원회</u> 의 조직) 지방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② 교역자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	【358】 제63조(<u>지방회 인사위원회</u> 의 조직) <u>지방회 인사위원회</u> 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지방’→‘지방회’
【363】 제68조(지방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와 <u>서리</u> 전도사(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선교사, 군목후보자)의 인사문제 ② <u>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인화와 친교의 도모</u>	【363】 제68조(<u>지방회 인사위원회</u> 의 직무) <u>지방회 인사위원회</u> 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장로와 전도사(<u>서리담임자</u> , 수련목회자, <u>수련선교사</u> , <u>군종사 관후보생</u>)의 인사문제 <개정> ② <삭제> ② <u>감리사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u> <개정>	‘지방’→‘지방회’
제 6 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372】 제77조(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지방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	제 6 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372】 제77조(직무) ① <좌동> ②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2.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3. 이중 직업을 가진 이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5.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6.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④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총회 성직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⑤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의회에서 부담한다.	1. <좌동> 2. <좌동> 3.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회 연회장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3. 미자립교회 이중직 제한적 허용 6항 참조
제 6 장 미주특별연회	제 6 장 미주특별연회	
【376】 제81조(미주특별연회 의회조직) 미주특별연회의 의회조직과 직무는 당회로부터 연회까지는 의회법에 준한다.	【376】 제81조(미주특별연회 의회조직) 미주특별연회의 의회조직과 직무는 미주특별연회 자치법에 의한다. <개정>	
【377】 제82조(미주특별연회 직무) 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연	【377】 제82조(미주특별연회 직무) 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미주	

현행	개정안	비고
회직무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① 미주특별연회는 연회 안의 교회와 기관들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미국 국내법에 의한 유지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여 유지재단 이사를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시무하게 한다. ② 미주특별연회에 소속한 연회원의 은급운영을 위하여 미국 국내법에 의한 은급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이는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은급은 종전의 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다. ③ 미주특별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 ④ <u>미주특별연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연회 운영내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u> ⑤ <u>미주특별연회의 유지재단 정관과 은급재단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입법의회가 닫혀 있는 동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u>	<u>특별연회 자치법에 준하되</u>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개정> ① <삭제> ② <좌동> ③ <좌동> ④ <삭제> ⑤ <삭제>	
제 7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378】 제83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u>미주특별연회</u>, 호남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제 7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378】 제83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개정>	‘미주특별연회’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379】 제84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①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379】 제84조(연회의 조직) 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②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신설>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신설>	‘항’으로 분리해서 신설
【382】 제87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매년 1회, 4월 또는 5월 중에 감독이 소집한다.	【382】 제87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다음과 같이 <u>연회장이</u> 소집한다.<개정> ① <u>정기연회는 매년, 4월 또는 5월 중에 연회장이 소집한다</u> <개정> ② <u>임시연회는 필요시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장이 소집한다.</u> <신설>	감독→연회장
【383】 제88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383】 제88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u>연회장</u>이 정한다.	‘감독’→‘연회장’
【386】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386】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2. 2년 간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미과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는 감독이 휴직을 명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연회 회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파송을 청원하면 감독에게 해당 교역자를 파송하도록 요청한다. 4.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연회는 과정보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⑥ 연회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⑦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연회 행정재판위원은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하여 7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⑨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이 감리회 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다. ⑩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그 연회 감독이 이사로 파송된 대학교에는 이사를 파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거부하는 신학대학교의 출신자는 감리회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지 아니한다. 2. 연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하였거나 토지, 건물, 재정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감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교육기관 제외)을 관리하고 이사 또는 위원을 선출 파송한다.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과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⑧ <u>연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천된 인원 중 심사와 재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추천된 인원이 부족할 경우 관리자가 부족인원을 추천한다. <개정></u> ⑨ <좌동> ⑩ <좌동> ⑪ <좌동> ⑫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과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원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2.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3.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4.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연회는 <u>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u> 6.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7.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8. <u>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u> 9.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u>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u> 10. <u>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u> 11. <u>연회는 주간 「기독교타임즈」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u>	1.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 2.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 3.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 4.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 5. 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과 <u>기독교대한감리회태화복지재단의 이사로 1명</u>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중에서 윤번제로 선출한다. <u>다만 호남선교연회는 제외한다.</u> <개정> 6. <좌동> 7. 연회는 <u>감독·연회장</u>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개정> 8. <삭제> 8.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하고</u> 명단을 <u>감독</u>에게 보고한다.<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12. 연회는 총회 행정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3. 연회는 총회 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4. <u>연회는 총회 특별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u> 15. <u>연회는 총회 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u> 16. <u>연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u> 17. <u>연회는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u> 18. 연회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9. 연회는 연수원 운영위원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9.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 10. 연회는 주간 「기독교타임즈」 이사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 12. <삭제> 11. 13호와 <좌동>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2. 18호와 <좌동> 13. 19호와 <좌동> 14. 연회는 도서출판 KMC 이사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개정></u>	12, 14-17까지 지방에서 추천으로 연회실행부위원회 직무로 이관

현행	개정안	비고
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⑮ 연회는 제3편 제4장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⑯ 연회는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⑰ 은퇴한 회원(자원은퇴 포함)은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각 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은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어야 한다. ⑱ 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규정된 분할 요건을 갖추면 연회분할 건의안을 채택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개체교회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연회에는 관리자를 둔다. 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㉑ <u>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에 준하되 총회 실행부 위원 외에 본부에 파송하는 각종 위원과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u> ㉒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	⑬ 연회는 <u>교역자특별조사위원</u>으로 교역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u>연회장</u>이 지명하는 1명을 선출한다. <개정> ⑭ <좌동> ⑮ <좌동> ⑯ <좌동> ⑰ <좌동> ⑱ <좌동> ⑲ <좌동>	㉒->㉑ 로 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㉔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u>감독</u>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㉕ <삭제> ㉖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u>감독</u>이 처리한다. <개정>	
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 【388】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과정고시위원회 : 연회 협동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재허입하고자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고시 과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회에 보고한다. 과정고시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 :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③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 본부의 선교정책에 따라 연회의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④ <u>교육사업위원회</u>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정책에 따라 사회평신도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 【388】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u>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u>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개정> ⑤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⑥ 재정위원회 : 연회의 재정 조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회 재정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⑦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 각 지방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상황을 조사한다. ⑧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 연회 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검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보존하게 한다. ⑨ 건의안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 다만, 건의안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⑩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⑪ <u>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u> ⑫ <u>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u> ⑬ <u>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연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되 20명 이내로 구성한다.</u> ⑭ <u>행정재판위원회 :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한 2명(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조직한다.</u> ⑮ 투표위원회 : 연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표시에 회원 수 및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u>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중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2개반을 조직한다. <개정></u> ⑫ <u>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와 고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방회에서 추천 받은 위원 중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2개반을 조직한다. <개정></u> ⑬ <삭제> ⑭ <삭제> ⑮ <좌동>	⑪, ⑫ 심사와 재판을 위해 지방에서 추천된 인사를 추천하여 조직 ⑬, ⑭ 장정유권이나 행정재판도 재판위원회가 담당하여 폐지.

현행	개정안	비고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투표업무를 담당한다. ⑯ 운영위원회: 연회 회기 중 연회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⑰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u>장정유권해석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⑯ <좌동> ⑰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⑰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삭제
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393】 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u>감독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u> ② <u>각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각 지방 평신도 대표</u> ③ <u>연회 정서기 1명.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u> ④ <u>연회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만 보유한다.</u> ⑤ <u>연회 총무와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u> ⑥ <u>연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 회장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u>	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393】 제98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u>연회실행부위원회는 연회장, 연회서기, 감리사, 지방회별로 선출한 평신도 각1명,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위원장, 과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남선교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합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합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합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u> <개정> ② <u>연회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u> <개정> ③ <u>연회서기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서기를 겸임한다.</u> <개정> ④ <u>연회 총무와 연회 감사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u> (개정) ⑤ <삭제> ⑥ <삭제>	①, ⑥항내용 통합변경 ①-> ②항으로 이동 ②-> ③항으로 이동 ③-> ④항으로 이동 ⑤-> ④항으로 이동 ⑥-> ①항으로 통합

현행	개정안	비고
	【000】 제00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 ① <u>연회실행부위원회는 연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한다.</u> <신설> ② <u>연회장은 연회실행부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전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연회장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리사 중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신설>	연회실행부 소집 절차
【394】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심사 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 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 ④ 연회 및 지방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 ⑤ 연회 및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 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 ⑩ 연회 각 협동총무의 선출 ⑪ <u>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u>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	【394】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⑩ <좌동> ⑪ <u>연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또는 연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장(전직 연회 감독 포함)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u>	⑪ 직무대행 선출 절차

현행	개정안	비고
한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⑫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u>표로 연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연회장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연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u> ⑫ <삭제> ⑫ 총회에 파견할 심사 및 재판위원과 연회 심사 및 재판위원을 지방회에 추천받아 추천으로 선출한다.<신설>	⑫ 선거법으로 이동
	제 00 절 <u>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u> <신설> 【000】 제1조(설치) 연회 안에 <u>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u>를 둔다.<신설> 【000】 제2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신설) ① <u>교역자 대표 3명</u><신설> ② <u>평신도 대표 3명</u><신설> ③ <u>연회장이 지명하는 1명</u><신설> 【000】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000】 제4조(직무) <신설> ① <u>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연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신설></u>	연회에 교역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현행	개정안	비고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신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사람<신설> 2.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사람 <신설> 4.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사람<신설> 5.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규정한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사람<신설> 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사람 <신설> 7. 불성실한 목회로 이임과 함께 교회를 폐쇄한 사람<신설> 8. 예배처소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신설> 9.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신설>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발 또는 연회장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신설> ④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신설> 【000】 제5조(위원회 소집) <신설>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②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연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제 6 절 연회 사무완결	제 6 절 연회 사무완결	

현행	개정안	비고
【406】 제11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의 <u>각항을 감독</u>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① 연회에 대하여 1. 이 연회는 합법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2. 이 연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었습니까? 3. 이 연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가 신원보증을 세웠습니까? 4. 모든 교역자의 품행과 직무상 처리에 무흠 여부를 심사하였습니까? ② 준회원에 대하여 1. 준회원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3.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4. 이미 목사안수 받고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5. 준회원 2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6. 다른 연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7. 다른 연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8.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된 이가 누구입니까? 9.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10. 금년에 국외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	【406】 제11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u>총문을 연회장</u>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개정> ① <좌동> ② 준회원에 대하여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u>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준필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u> <신설> 7. 6호와 <좌동> 8. 7호와 <좌동> 9. 8호와 <좌동> 10. 9호와 <좌동> 11. 10호와 <좌동> 12. 11호와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11.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12.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13.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14.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15. 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6. 금년에 신병으로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7.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18.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9.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 ③ 정회원에 대하여 <이하 생략>	13. 12호와 <좌동> 14. 13호와 <좌동> 15. 14호와 <좌동> 16. <u>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u> <개정> 17. 16호와 <좌동> 18. 17호와 <좌동> 19. 18호와 <좌동> 20. 19호와 <좌동> 21. <u>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u> <신설> ③ 정회원에 대하여 <이하 생략>	
제 8 장 총회 제 1 절 총회 【407】 제112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u>입법과</u>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출된 <u>감독과 감독회장의</u> 취임식을 거행한다. 단, 입법 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	제 8 장 총회 제 1 절 총회 【407】 제112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출된 <u>연회장과 감독의</u> 취임식을 거행한다. <개정>	‘단, 입법업무는’ 이하 삭제
【408】 제113조(총회의 구성) 총회 대표는 1,500명 이내로 하되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교역자 직능대표 :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② 평신도 직능대표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 연회 실행위원	【408】 제11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u>총회는 교역자대표와 평신도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u>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③ <u>선출직 교역자 대표 :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하여 연급, 전문성, 성별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u> ④ <u>선출직 평신도 대표 : 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년수와 전문성, 지방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하되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u> ⑤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⑥ 총회 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⑦ 미파자 및 휴직자는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⑧ 총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⑨ <u>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0인씩을 총회 대표 후보로 선출한다.</u> ⑩ 정회원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 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	③ <u>총회대표는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서 배정받아 지방별로 당연직을 제외한 교역자와 평신도 선출직 인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개정></u> 1. 1명일 경우는 자유롭게 선출한다.<신설> 2. 2명일 경우는 50세 미만 1명, 50세 이상 1명<신설> 3. 3명 이상 5명일 경우는 여성 1명<신설> 4. 6명 이상 7명일 경우는 여성 2명<신설> 5. 다만 평신도 여성은 장로로 한다. <신설> ④ <삭제> ④ ⑤항과 <좌동> ⑤ ⑥항과 <좌동> ⑥ ⑦항과 <좌동> ⑧ ⑨항과 <좌동> ⑨ <u>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 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 <개정></u> ⑩ <u>선출직으로 2회를 연속하여 총회대표를 역임한 사람은 1회기를 쉬지 않고는 총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신설></u> ⑪ <u>입법의회 회원과 심사 및 재판위원은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 <신설></u>	③ 지방별 배정인원에 맞게 선출한다. ④ ⑨항에서 이동, 총대후보선출 ⑩ 모든 총대동일적용, 총대 3회 연임불가 ⑪ 입법회원,심사,재판위원 겸직금지

현행	개정안	비고
【409】 제114조(총회 의장) <u>총회 의장은 감독회장이</u>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나 감독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09】 제114조(총회 의장) ① <u>총회 의장은 감독이 된다.</u> <신설> ② <u>감독이 유고시 위임한 사람이나 연회장 중에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신설>	항 구분하여 신설
【412】 제117조(총회의 소집) ① <u>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u>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u>감독회장</u>이 결정한다. 다만, 회기 종료 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u>감독회장의</u>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직전 회기의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 회기 <u>감독회의</u>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임시 총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 또는 총회 대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u>감독회장</u>이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u>감독회장</u>이 결정한다.	【412】 제117조(총회의 소집) <u>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u> <개정> ① <u>정기총회는</u> 2년에 1회 10월 중에 <u>감독이</u>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u>감독이</u> 결정한다. 다만, 회기 종료 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u>감독의</u>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직전 회기의 <u>연회장</u>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 회기 <u>연회장회의</u>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② 임시 총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 또는 총회 대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u>감독이</u>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u>감독이</u> 결정한다. <개정>	
【413】 제118조(입법의회의 설치) <u>총회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설치하여 입법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입법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법으로 정한다.</u>	【413】 제118조(입법의회의 설치) <삭제>	입법의회를 별도 의회로 설치
【414】 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의 총괄적 정책수립 : 총회는 감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② 감리회 본부 설치 : 총회는 의결된 정책을 기획하고 연회를	【414】 제11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리회 내의 통신사업과 홍보사업을 위해 서울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한다. 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⑤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 총회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위하여 총회 특별위원회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감리회에 속한 모든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게 한다. 유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을 설립하고 교역자의 은급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⑧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③ <u>감독과 연회장</u> 선출 : <u>감독 및 연회장</u> 선거법에 따라 <u>감독과 연회장</u>을 선출한다. <개정>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사회복지법인 <u>기독교대한감리회</u> 태화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u>기독교대한감리회</u> 태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u>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u> 태화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⑨ <좌동>	순서를 동일하게 감리회→기독교대한감리회

현행	개정안	비고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장학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회에서 관장한다.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 총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감리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 총회는 감리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 - 총회는 교회연합기관과 특수선교기관에 이사 또는 위원을 파송한다. - 총회에서 파송한 이어나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가 단힌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 -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단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파송을 취소한다. ⑫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대학교 총장 인준 :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총장의 인준은 총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총회가 단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	⑩ <좌동> ⑪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단힌 후에는 감독이 파송을 취소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⑫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준한다. ⑬ 입법의회 회원 선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 2. 연회별로 후보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한다. 3. 연회 감독은 입법의회 회원이 선출되는 즉시 이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4.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대로 연회별로 2명씩(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의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⑭ 총회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⑮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⑯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위원은 가급적 법전문인으로 한다. 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임감독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⑱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⑬ <삭제> ⑭ <u>총회 심사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2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u> ⑮ <u>총회 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2명을 2개 반으로 구성한다. <개정></u> ⑯ <삭제> ⑰ <u>총회 최고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과 연회장회의에서 추천한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u>	⑬ 입법의회 대표 별도 선출 ⑯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폐지 ⑰→⑯으로 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①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교역자 20명, 평신도 2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전임감독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 ②⑩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②⑪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지명하는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②⑫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②⑬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②⑭ 선교연회 조직 : 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②⑮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명할 수 있다. ②⑯ 임시 총회의 직무는 임시 총회 소집 안건에 한한다.	①⑦ <삭제> ①⑧ <삭제> ①⑨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4명(교역자 22명, 평신도 22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2명(전임연회장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②⑩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호남선교연회 1명, 감독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②⑪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선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호남선교연회 1명, 감독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②⑫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선교연회 1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연회장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②⑬ <좌동> ②⑭ 선교연회 조직 : 총회는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②⑮ 감독이 지명하는 법조인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명할 수 있다.<개정> ②⑯ <좌동>	①⑧ 행정재판위 폐지 ①⑨, ①⑦로 이동 ②⑩, ①⑧로 이동 ②⑪, ①⑨로 이동 ②⑫, ②⑩로 이동 ②⑬, ②⑪로 이동 ②⑭, ②⑫로 이동 ②⑮, ②⑬로 이동 ②⑯, ②⑭로 이동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장 입법의회 제1절 입법의회 【420】 제125조(입법회의의 조직) 입법회의의 조직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선출직 회원 : <u>총회에서 선출한 회원</u> 정수는 총회 회원의 3분의 1로 한다. ② 직권상 회원 : <u>감독회장 및 각 연회 감독</u> ③ <u>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u>은 입법의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④ 임명직 회원 : <u>입법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 중에서 감독회장이 임명한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u> ⑤ 선출직 회원 중 결원 및 이명자가 생기면(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참석불가를 입법의회 개회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후보회원이 그 순위에 따라 지위를 계승한다. ⑥ 입법의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입법의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제9장 입법의회 제1절 입법의회 【420】 제125조(입법회의의 조직) 입법회의의 조직은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선출직 회원 : <u>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씩 선출한 사람으로 하며, 연회장이 교역자, 평신도 각 10명을 선임한다.</u><개정> ② 직권상 회원 : <u>감독 및 각 연회장과 선교연회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u> (개정) ③ <삭제> ④ <삭제> ③ ⑤항과<좌동> ④ ⑥항과<좌동> ⑤ <u>선출직 입법의회 회원은 총회대표, 총회 심사위원, 총회재판위원을 겸할 수 없다.</u> <개정>	③, ②항에 통합 ④ 항 삭제
【421】 제126조(입법의회 회원의 임기) 입법의회 회원의 임기는 총회 회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421】 제126조(입법의회 회원의 임기) 입법의회 회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424】 제129조(입법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의 결정) <u>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입법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u>	【424】 제129조(입법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의 결정) <u>감독</u>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입법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개정>	감독회장→감독
【425】 제130조(입법위원회의 소집) 입법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정기 입법위원회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u>감독회장</u>이 소집한다. ② 임시 입법위원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u>결의</u>를 거쳐 <u>감독회장</u>이 소집한다. ③ <u>감독회장</u>은 입법위원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위원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u>감독회장</u>이 정기 입법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425】 제130조(입법위원회의 소집) 입법위원회의 소집은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정기 입법위원회는 <u>매 2 년마다</u> 10월 중에 <u>감독이</u> 소집한다. <개정> ② 임시 입법위원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u>협의를</u> 거쳐 <u>감독이</u> 소집한다. <개정> ③ <u>감독은</u> 입법위원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위원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u>감독이</u> 정기 입법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426】 제131조(입법위원회 의장) 입법위원회의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26】 제131조(입법위원회 의장) 입법위원회의 의장은 <u>감독이</u> 된다. <u>감독</u> 유고시에는 <u>감독이</u> 지명하는 <u>연회장</u>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u>연회장</u> 중에서 <u>연급순, 연장자순으로</u>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430】 제135조(입법위원회의 직무) 입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헌법개정 ②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430】 제135조(입법위원회의 직무) 입법위원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현행	개정안	비고
기독교타임즈)의 제정 및 개정 ③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④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 과정의 제정과 개정 ⑤ 연회경계 조정 및 분할 ⑥ 외국 감리교회와 체결하는 협약의 인준 ⑦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삭제>	⑦항은 ‘총실위 직무’로 이동
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432】 제13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① 헌법연구위원회 : 헌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②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연구위원회 :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③ 예문연구위원회 : 감리회의 각종 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연구위원회 : 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⑤ 연회 및 지방회경계조정연구위원회 : 연회 및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거나 선교연회 설치에 관한 연구 및 건의를 담당한다. ⑥ 의회제도연구위원회 : 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	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432】 제13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개정> ①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 헌법에 관한 연구와, 공천 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② 교리적선언 및 사회신경, 예문연구위원회 :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 감리교회의 각종 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③ <삭제> ③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 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⑤ <삭제> ④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 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와	①, ⑫항과 통합 ②, ③항과 통합 ④, ⑤⑥⑦통합

현행	개정안	비고
한 연구를 담당한다. ⑦ <u>교회행정법연구위원회 : 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 ⑧ <u>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 교회재산 관리 및 유지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 ⑨ <u>국·외 감리교회와의 협약체결연구위원회 : 국·외 감리교회와의 각종 협약체결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 ⑩ <u>재판법연구위원회 : 재판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 ⑪ <u>교역자인사관리 및 은급제도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 ⑫ <u>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 : 분과위원회 공천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u> ⑬ <u>장정개정위원회 : 장정개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u> 1.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2.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4명(교역자, 평신도 각 2명) 3.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을 편찬한다. ⑭ <u>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 : 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 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법조인 1명 이상)을 둔다.</u>	<u>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 <개정> ⑦ <삭제> ⑤ ⑧ 항과 <좌동> ⑨ <삭제> ⑥ ⑩항과 <좌동> ⑦ <u>은급제도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u><개정> ⑫ <삭제> ⑧ <u>장정개정위원회 :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u> <개정> ⑭ <삭제>	⑦, ⑩항에서 이동 ⑫, ①항에 통합 ⑭->⑧으로 이동 ⑨ 내용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⑮ 운영위원회 : 입법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⑨ <u>규정 및 규칙 위원회 : 규정 및 규칙위원회는 규정 및 규칙을 연구하고 심사한다. <신설></u> ⑩ ⑮항과 <좌동>	
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434】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③ 당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④ 본부 <u>감사</u> 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제 10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434】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u>감독과 각 연회장(미주특별연회 포함)</u> , 선교연회 관리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개정> ② 선출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u>중 1명, 미주특별연회 평신도 1명</u> ③ <좌동> ④ 본부 <u>감사위원장과 서기</u> 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①, ② 미주특별연회 포함' 감사 위원 참석 축소
【435】 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전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전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전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전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분	【435】 제140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 ① <u>총회에 상정할 안전을 예비 심사한다.</u> <개정> ② <u>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전을 협의한다.</u> <개정> ③ <좌동> ④ <u>감리회본부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u>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석 ⑤ 감리회 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⑦ <u>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⑧ <u>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u>	⑤ <u>감리회본부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승인한다.</u> <개정> ⑥ <좌동> ⑦ <u>감독의 궐위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장(전직 연회 감독 포함)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직무 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u> <개정> ⑧ <삭제> ⑧ <u>연회에서 추천된 총회 심사위원 및 재판위원과 연회장 회의에서 추천된 법조인을 총회 심사위원 및 재판위원과 총회 최고재판위원으로 선출한다.</u> <신설> ⑨ <u>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u><개정> ⑩ <u>총회가 단힌 후 발생하는 사항 중 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u> <신설>	⑦ 감독 직무대행 선출방법 ⑧ 항은 ‘선거법’으로 이동 ⑧ 입법의회에서 이동 ⑨항 신설
【436】 제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 실행	【436】 제14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 실행	

현행	개정안	비고
부위원회는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u>감독회장</u>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여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u>감독회장</u>이 소집한다.	부위원회는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u>감독</u>이 소집한다. <개정> ① 정기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여 <u>감독</u>이 소집한다. <개정> ②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u>연회장</u>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u>30일</u> 이내에 <u>감독</u>이 소집한다. <개정> ③ 제2항에 의한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독이 이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연회장 중 연급·연장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
제 11 장 총회 특별위원회 【437】 제14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① 행정조정위원회 ② 선거관리위원회 ③ 재판위원회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⑤ <u>장정연구위원회</u> ⑥ <u>장정유권해석위원회</u>	제 11 장 총회 특별위원회 【437】 제14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u>심사 및</u> 재판위원회 <개정> ④ <좌동> ⑤ <삭제> ⑥ <삭제>	
제 1 절 행정조정위원회 【439】 제14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u>감독회장</u>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제 1 절 행정조정위원회 【439】 제14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u>호남선교연회 1명</u> 및 <u>감독</u>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444】 제14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직 : 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u>감독회장</u>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 ② 임무 :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444】 제14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직 : 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u>감독</u>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 ② 임무 : <u>연회장</u> 및 감독 선거법에 준한다.	감독회장→감독
제 3 절 재판위원회 【445】 제150조(구성) 총회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내에 총회 심사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 절 <u>심사 및</u> 재판위원회 <개정> 【445】 제150조(구성) 총회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내에 총회 심사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u>총회 최고재판위원회</u> 등 <u>3개</u> 위원회를 구성한다.	재판 위원회 간소화
【446】 제151조(조직) 5개 위원회의 조직은 재판법에 준한다.	【446】 제151조(조직) <u>3개</u> 위원회의 조직은 재판법에 준한다.	
<u>제 5 절 장정연구위원회</u> 【451】 제156조(장정연구위원회) 총회는 장정연구위원회를 두어 장정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한다. 【452】 제157조(조직)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으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겸한다. 【453】 제15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454】 제159조(직무)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u>장정에 대한 연구</u> ② <u>헌법 및 법률과 정관, 규정, 규칙, 문서서식의 조문 연구</u>	<u>제 5 절 장정연구위원회</u> <삭제> 【451】 제156조(장정연구위원회)<삭제> 【452】 제157조(조직) <삭제> 【453】 <삭제> 【454】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차기 장정개정위원회 준비	③ <삭제>	
<u>제 6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u> <u>【455】 제160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두어 장정유권해석을 한다.</u> <u>【456】 제161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법조인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집사 이상이어야 한다.</u> <u>【457】 제162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u>【458】 제163조(직무)</u> ①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유권해석의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다 의견수로 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u>제 6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u> <삭제> <u>【455】 제160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삭제></u> <u>【456】 제161조(조직)<삭제></u> <u>【457】 제162조(임기)<삭제></u> <u>【458】 제163조(직무)<삭제></u>	

현행	개정안	비고
<u>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u> 1. <u>감독회장이 재 결의를 요청하는 경우</u> 2. <u>중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u> 3. <u>중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u> 4. <u>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u>		
부 록 : 의사진행 규칙 【459】 제1조(안전심의) 안전심의회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고 동의와 재청을 받아 이를 표결에 부친다.	부 록 : 의사진행 규칙<개정> <u>제1장 개의(開議) · 산회 · 폐회</u> 【000】 제1조(개의) ① <u>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u> 1. <u>당회는 개최일자를 2주 전에 후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u> 2. <u>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u> ② <u>각 의회의 의장은 공고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u> ③ <u>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u>	전체 개편으로 <개정>
【460】 제2조(의제성립) 의제는 동의와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000】 제2조(산회) ① <u>공고된 안전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u>	

현행	개정안	비고
	② <u>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u> ③ <u>모든 회의가 끝났거나 회기가 끝난 후에는 폐회를 선포한다.</u>	
【461】 제3조(변안동의) 변안동의는 종전의 의안을 발의한 회원이 동의를 해야 하고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안동의는 한 회기 내에서만 가능하다.	【000】 제3조(회의의 공개) <u>각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의 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462】 제4조(긴급동의) 회원의 안전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중인 안건을 보류하고 이 안건부터 심의한다.	제2장 발의·철회·변안 【000】 제4조(의안의 발의) ① <u>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석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u> ② <u>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u>	
【463】 제5조(안건의 표결 순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개정안 또는 수정안이 성립된 경우에는 최후에 발의한 개정안 또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다만, 인사에 관한 안건은 원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000】 제5조(동의) <u>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재청 1명 이상으로 의제가 된다.</u>	
【464】 제6조(발언의 허가) 발언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을 요청하고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야 한다.	【000】 제6조(긴급동의) <u>회원의 안전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중인 안건을 보류하고 이 안건부터 심의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심의할 수 있다.</u>	만국통상회의법 17장 4항 3호
【465】 제7조(규칙발언) 안건처리가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될 때에 회원이 요청하는 규칙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우선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000】 제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u>각 의회의 회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u>	

현행	개정안	비고
	<u>대하여는 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당해 의회 및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66】 제8조(발언권의 보장) 발언권을 허락받은 회원의 발언은 다른 회원에 의해 정지될 수 없으며 정회로 발언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속회 즉시 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	【000】 제8조(변안) ① <u>변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② <u>위원회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는 상급의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u>	
【467】 제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발언권을 허락받은 회원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	【000】 제9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468】 제10조(찬반 토론의 균형) 의장은 찬반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 쌍방의 발언을 공평하게 허락한다. 이때에 발언자는 찬반 어느 편인지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의사와 수정 【000】 제10조(안전심의) <u>각 의회 및 위원회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 발의 및 동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토론을 거쳐 표결한다.</u>	
【470】 제12조(질의와 토론의 종결)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의장이 판단하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토론 종결은 발언자 이외의 회원이 발의할 수 있다.	【000】 제1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u>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u> ② <u>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u>	
	제4장 발언	

현행	개정안	비고
【471】 제13조(의결 정족수) 각 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법으로 이를 따로 규정한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① 당회 :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역회 : 구역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방회 : 지방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과정보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회 : 연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등록한 후 개회하고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00】 제13조(발언의 허가) ① <u>회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② <u>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u>	
【472】 제14조(표결안건의 선포) 표결하고자 할 때는 의장이 표결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표결안건의 제목이 선포된 후에는 어느 회원도 발언할 수 없다.	【000】 제14조(발언의 계속) <u>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회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의가 속회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u>	
【473】 제15조(표결방법) 표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① 주요 안건의 표결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이의가 없는 경우 기립하거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이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000】 제15조(규칙발언) <u>안전처리가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될 때에 회원이 요청하는 규칙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우선권을 허락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인사에 관한 안건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474】 제16조(투표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000】 제1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u>모든 발언은 의제를 넘어서는 안 되며,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u>	
【475】 제17조(일사부재의의 원칙) 그 회기 중 일단 의결된 안건은 다시 재론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다만, 번안동의는 제외)	【000】 제17조(찬반 토론의 균형과 통지) <u>의장은 찬반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 쌍방의 발언을 공평하게 허락한다.</u> ① <u>토론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② <u>의장은 통지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u>	
	【000】 제18조(의장의 토론참가) <u>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u>	
	【000】 제1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u>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u>	
	<u>제5장 표결</u> 【000】 제20조(의결정족수) ① <u>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현행	개정안	비고
	【000】 제21조(표결의 선포) ① <u>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u> ② <u>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u>	
	【000】 제22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u>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u> ② <u>위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u> ③ <u>각 의회, 위원회,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이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u>	
	【000】 제23조(표결방법) ① <u>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u> ② <u>헌법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u> ③ <u>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u> ④ <u>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제외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u> ⑤ <u>표결은 찬성부터 묻는다.</u>	
	【000】 제24조(표결결과선포) <u>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u>	

현행	개정안	비고
	【000】 제25조(무기명투표절차) ① 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회원은 먼저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위원으로 하여금 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제26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u>제6장 회의록</u> 【000】 제26조(회의록) ① 각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회원의 수 및 성명 4. 예배에 관한 사항 5. 부의안건과 그 내용 6. 의장의 보고사항 7. 각종 보고서 8. 발언요지 9. 표결수 10. 회원의 발언보충서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
	② <u>회의록에는 의장,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u>	
	<u>부칙 (2015.10.30)</u> <u>【4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신설> _</u> <u>【485】 제2조(경과조치) 이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 위원회의 임기는 이법 이전의 법에 따른다. <신설></u> <u>【485】 제3조(경과조치) 412단 제 117조(총회의 소집) 제1항의 직전 연회장회의는 제32회 총회 회기 안에는 직전 감독회의로 한다.<신설></u> <u>【486】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감독회장과 감독은 구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u>	이전 부칙 하단에 추가

현 행	개정안	비고
제5장 선거운동	제5장 선거운동	
【1034】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34】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좌동>	
【1035】 제21조(선거감시단)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선거감시원 2명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u>선거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u>	【1035】 제21조(선거감시단)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삭제>	○자원봉사에 의한 무보수
【1036】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u>감독회장</u> ,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 ② <u>감독</u> ,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1036】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u>감독회장 및</u>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 ②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u>지방급 이상 자치단체장</u> <신설>	
【1037】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 <u>홍보 명함</u> 을 제작·배	【1037】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u>후보자가 선관위의 승인을</u>	

현 행	개정안	비고
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7분 이내의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동영상을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u>받아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는</u>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1038】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u>선거 당해연도부터</u> 적용한다.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u>광고 게재, 화환 증정</u> 등을 하는 행위 ⑤ <u>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u> ⑥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1038】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u>다음의</u>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u>선거일 1년 전부터</u> 적용한다. <개정>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와 <u>동창회 등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을 하는 행위</u> <개정> ⑤ <삭제> ⑤ ⑥ 항과 <좌동> ⑥ ⑦ 항과 <좌동>	경과조치에 별도로 정함 ④ ‘광고게재, 화환조항’ 삭제, ‘동창회’ 추가.

현 행	개정안	비고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⑦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u>관여나 참여하는</u> 행위 <개정> ⑧ ⑨ 항과 <좌동> ⑨ ⑩ 항과 <좌동>	
【1039】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u>후보자나 선거감시원이</u>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다. ② 선거감시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039】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u>선거권자는</u>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하거나, <u>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2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u> <개정> ② <좌동>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u>총회 심사위원회</u> 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u>제2항에</u>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① 제9조 2항은 ‘고소고발시에 3인이 해야함’
제6장 투표와 개표 【1041】 제2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 제〇〇회 총회 감독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②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u>다만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선거 투표용지는 자체 제작한다.</u>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1041】 제2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 제〇〇회 총회 감독선거, <u>연회장</u> 선거라고 기재한다. <개정> ② <좌동>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개정> ④ <좌동>	③ ‘다만, 미주특별연회.... 제작한다’ 삭제
【1043】 제29조(우편투표) ① <u>미주특별연회는</u>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삭제>	‘보칙’으로 이동

현 행	개정안	비고
<u>실시할 수 있다.</u> ② <u>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③ <u>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u>		
제7장 보칙 【1048】 제34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②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제7장 보칙 【1048】 제34조(재·보궐선거) <개정> ① <u>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1/2이상인 경우 감독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개정> ② <u>연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1/2이상인 경우 연회장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 하며, 보선된 연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2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개정>	※ 연회원전체가 선거권자로 하는 직접선거이므로 재·보궐 선거도 직접선거를 하여야 함.
【1049】 제35조(직무대행) ① <u>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u>	【1049】 제35조(직무대행) <삭제>	총회와 연회 실행부위원회 직무에 규정

현 행	개정안	비고
<u>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② <u>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u>		
【1043】 제29조(우편투표) ① <u>미주특별연회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u>우편투표를 실시하려면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③ <u>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u>	【000】 제00조(우편투표) ① <u>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는 감독 선거나 연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u> ② <u>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u> <개정> ③ <좌동>	
【1050】 제36조(재정) ① <u>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특별회계로 하고 입후보자의 등록금(50%)과 본부 예산(50%)으로 충당한다.</u> ② <u>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u> ③ <u>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u> ④ <u>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u> ⑤ <u>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잔여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에 기부한다.</u>	【1050】 제36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u>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u> 충당한다. <개정> ② <좌동> ③ <좌동>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⑤ <u>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신설></u> ⑥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u>총회 실행부위</u>	④항을 4항과 5항으로 분리

현 행	개정안	비고
	<u>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입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반환한다.</u> <개정>	
【1051】 제37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1051】 제37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u>총회 심사위원회</u>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u>90일</u>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u>총회 심사위원회</u>는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u>15일</u>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u>다만 당사자 사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일간 연장 할 수 있다.</u> <개정>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u>30일</u>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052】 제38조(벌칙처벌) ① <u>후보자가 아닌</u> 사람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u>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u> ② <u>후보자가</u>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u>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u> ③ 선거관리위원이 <u>선거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u>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는 <u>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u>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1052】 제38조(벌칙처벌) ① <u>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u> 사람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u>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u> <개정> ② <u>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u>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u>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u> <개정> ③ 선거관리위원이 <u>선거법 제5조 7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u>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u>사람은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u> <개정> ⑤ <좌동>	① 운동원이나 은퇴한 이가 불법을 행하였을 경우, 후보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함. ② 선거법위반시 후보자에게 벌칙 강화

현 행	개정안	비고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⑦ <u>총회 개회 전일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u> ⑧ <u>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u> ⑨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보류한다. ⑩ <u>감독, 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가 일정기간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u>	⑥ <좌동> ⑦ <삭제> ⑧ <삭제> ⑦ ⑨와 <좌동> ⑧ <u>감독및 연회장선거</u>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u>을 한 자와 <u>위원회는</u>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u>총회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u>, 그 직임을 정지하며 <u>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u> <개정> ⑨ <u>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마스크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매체란 각종 유인물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등을 말한다.</u> <신설> ⑩ <u>선거법 제36조 3항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책임자는 납부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하여야 한다.</u> <신설> ⑪ <u>선거법 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u> <신설>	⑦ 1051단체37조①항과 동일 ⑧ 7조④항에 규정됨
	부 칙 (2015. 10. 30)	부칙추가

현 행	개정안	비고
	【000】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00】 제2조(경과조치) <u>이 법 제13조 제11항과 제24조는 2016년 시행하는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u>	피선거권/ 현직 연회장 선거운동금지사항/ 1년 적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교역자생활지원법<신설></u>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의 개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역자가 사역에 전념하여 교회의 선교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생활지원금"이란 교역자가 사역에 집중하고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리회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대상교역자"란 이 법에 따른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교역자를 말한다. ③ "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교역자"란 이 법에 따른 교역자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교역자를 말한다. ④ "교역자기초생활비"란 감리회 교역자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회가 정한 교역자 생활 기초비용을 말한다. <u>제2장 교역자의 생활지원</u> 제3조(교역자의 생활지원금 지원) 감리회는 교회재정의 부족으로 개체교회로부터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 기초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담임자의 생활을 위하여 교역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제4조(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에 따른 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은 개체교회 단위로 실시하되 우선 개체교회 담임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u> <u>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범위는 연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선정한다.</u> <u>제6조(교역자생활지원금 산정)</u> ① <u>교역자생활지원금액은 매년 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다.</u> ② <u>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년 수급교역자의 기준 연령과 기한을 정한다.</u> <u>제7조(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의 교역자 급여기준)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는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 담임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u> <u>제3장 사업관장기관</u> <u>제8조(교역자생활지원 사업 관장기관)</u> ① <u>이 법에 따른 교역자생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행정은 총회행정부 가 한다.</u> ② <u>총회는 이 법이 정한 교역자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위하여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u> <u>제4장 생활지원위원회</u> <u>제1관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제9조(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는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회에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u> <u>제10조(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 선임)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지방 미자립교회대책위원회로 한다.</u> <u>제11조(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소집)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 3월과 9월 위원장이 소집한다.</u> <u>제12조(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직무)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① 당해 지방회의 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교역자 추천 ② 당해 지방회의 교역자급여 지급 상황에 대한 조사 <u>제2관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u> <u>제13조(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는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회에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u> <u>제14조(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 선임)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연회미자립교회대책위원회로 한다.</u> <u>제15조(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소집)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 4월과 10월 위원장이 소집한다.</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6조(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직무)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당해 연회의 교역자생활지원금 수급교역자 선정 ② 당해 연회의 교역자급여 지급 상황에 대한 조사 <u>제3관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u> 제17조(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는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8조(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 선임)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총회미자립교회대책위원회로 한다. 제19조(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소집)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 5월과 11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직무)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 소속 교역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② 매년 교역자생활보장지원금, 교역자기본생활비 및 개체교회가 책정해야 하는 교역자 급여기준을 결정한다. ③ 매년 교역자생활보장지원금 수급교역자의 기준연령과 기한을 정한다. ④ 감리회 교역자생활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가 의결한 사항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역자생활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제5장 교역자생활보장지원 대상 교회의 선정</u> <u>제21조(실태조사)</u> ① 감독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에 따라 연회 및 지방회 별로 소속 교역자 전원의 급여지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개체교회의 결산액 대비 급여비율 2. 개체교회가 지급하는 교역자의 급여총액 3. 교역자의 동거가족 현황 및 동거가족의 직업 4. 개체교회의 부동산(임대교회의 경우 임대 현황) <u>제22조(교역자생활지원 확정)</u>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교역자생활지원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u>제23조(교역자생활지원 신청 등)</u> 교역자생활지원을 원하는 개체교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역자생활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교역자생활지원을 원하는 개체교회는 교역자생활지원요청서를 지방회를 경유하여 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는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가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회생활지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본부에 교역자생활지원 요청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개체교회 담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제24조(교역자생활지원 신청에 의한 조사)</u> ① 연회는 제23조에 따른 교역자생활지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개체교회 연간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 2. 개체교회에서 편성한 담임자 급여예산 계획 및 결산현황 3. 개체교회의 임대료지급현황 및 금융기관 부채와 그 이자지급 현황 4. 개체교회 담임자의 동거가족 및 가계 총수입 현황 ② 지방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개체교회 및 교역자생활지원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u>제25조(교역자생활지원 개체교회의 결정)</u> ①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과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와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총회생활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회는 제1항에 따라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교역자생활지원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역자생활 지원을 신청한 개체교회와 교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제6장 교역자생활지원 후원교회의 선정</u> <u>제26조(미자립교회 지원 실태 조사)</u> ① 감리사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 지방회 개체교회 중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교회를 조사하여 연회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미자립교회 지원금액 2.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현황 3. 익년도 미자립교회 지원예산 4. 당해 교회가 지원하기 원하는 교회 또는 지역 ② 연회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지방회 별로 미자립교회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제27조(교역자생활지원 의향 조사 등)</u> ① <u>감리사는 매년 9월 말까지 당해 지방회 개체교회 중 교역자생활보장 대상 개체교회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개체교회를 조사하여 연회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② <u>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체교회는 매년 10월 말까지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개체교회와 지원에 대한 의향서를 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연회는 교역자생활지원 의향 조사 등을 매년 10월 말까지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u> <u>제28조(지원 대상교회 선정 등)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7조에 의한 지원의향서를 제출한 개체교회가 지원할 개체교회와 지원금액을 정하여 통보한다.</u> ① <u>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교회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u> ② <u>총회 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교역자생활 후원 교회를 지정한다.</u> <u>제29조(이중지원 금지 등) 이 법에 의한 교역자생활지원 대상 교회가 감리회에 소속한 개체교회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하되 이후 3년 간 이 법에 의한 교역자생활지원 대상교회에서 제외한다.</u> ① <u>개체교회가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로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u> ② <u>담임 교역자가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역자생활비를 지원 받는 경우</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제7장 교역자생활지원 절차</u> <u>제30조(교역자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 교역자생활지원금은 다음 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u> ① <u>교역자생활 후원교회는 매월 감리회가 정한 기일까지 정한 계좌로 약정한 후원금을 입금한다.</u> ② <u>교역자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총회생활지원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당해 개체교회 혹은 대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u> <u>제31조(교역자생활지원금의 변경)</u> ① <u>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개체교회가 지급하는 급여, 임대료, 이자, 가족의 총수입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개체교회,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대한 교역자생활지원금의 지원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과 개체교회 및 수급교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제32조(교역자생활지원금의 지원 중지)</u> ① <u>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개체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자생활지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u> 1. <u>개체교회가 지급하는 급여와 가족의 수입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u> 2. <u>교역자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u> 3. <u>개체교회가 교역자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② 개체교회가 제24조의 교역자생활지원 신청에 의한 조사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여 부당하게 교역자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자생활지원금 지원을 중지한다. 이 경우 당해교역자나 개체교회는 이후 3년간 교역자생활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u>제8장 이의신청</u> 제33조(교역자생활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교역자생활지원을 신청한 교역자나 개체교회 혹은 감리사는 연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해당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② 총회교역자생활지원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교역자, 개체교회 혹은 감리사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u>제9장 교역자생활지원 비용</u> 제35조(교역자생활지원 비용) 이 법에서 "교역자생활지원 비용"이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① 생활지원위원회의 법 운영에 드는 비용 ②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6조(교역자생활지원 재원마련) 교역자생활보장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마련한다. ① 개체교회의 미자립교회 지원금(보고 접수) ② 연회 및 지방회의 미자립교회 지원금(보고 접수) ③ 감리회 출판국의 매년 사업수익금 중 20% ④ 부담금 2019년도부터 0.3% ⑤ 본부 임대수입금 중 일부 (기부 금액은 매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기타 기부금 <u>제10장 벌칙</u> 제37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역자생활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교역자생활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u>부 칙</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감독과 연회장 및 감리사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로 교역자생활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역자생활지원추진위원회는 구성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교역자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연회공동발의 법률개정안

1. 중부연회 외 4개 연회 공동발의안

현 행	개정안	비고
[429]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③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④ 장정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발의된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에 대하여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만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429]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현행안과 동일)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현행안과 동일) (현행안 ③항은 삭제)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은 입법의회 개회 60일 전까지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장정개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문제가 없을 시에는 그대로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접수된 개정안이 모순되거나, 불균형, 또는 관련 법률과의 충돌 등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회나 위원회에 이유를 적시하여 반송하여 다시 조정하여 접수토록 하고 재 접수된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1.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안한 법안 2. 각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안한 법안 3.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법안에 대하여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안한 법안 4. 유지재단이사회,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 장학재단이사회에서 해당 법률 및 정관과 규정에 대하여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안한 법안 5.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 법안	

◆ 현장 발의안